

#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2053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7일

발 의 자 : 유광상, 신원철, 김동율,  
김태수, 유 용, 권미경,  
김정태, 김인호, 최판술,  
문종철, 장홍순 의원(11명)

## 1. 주문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도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업의 중지·시설의 사용중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히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나 감독 관할 관청의 지도·감독마저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인근 주민이 무방비상태로 비산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코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 없음

### **4. 이송처**

- 가. 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 나. 정부 : 환경부

**5. 첨부** :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

-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인접한 초등학교에서는 비산먼지 배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공사장을 가로질러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흙먼지로 인해 체육수업은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한 방송사 취재진에서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지역의 당일 미세먼지농도는 ‘보통’인  $55\mu\text{g}/\text{m}^3$ 이었는데 이곳은 두 배 가까이 높은  $97\mu\text{g}/\text{m}^3$ 로 나타나 ‘나쁨’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제43조에 따르면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입니다.

- 따라서 관할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도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의 이행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2017. 8. 17.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생략)</p> <p>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p> <p>-----</p> <p>-----</p> <p>-----</p> <p>-----</p> <p>-----</p> <p>-----</p> <p>-----</p> <p>③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p> <p>-----</p> <p>-----</p> <p>-----</p> <p>-----</p>